

# 예산총칙

202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|                 | 450,246,923 | 13,507,408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| 420,867,710 | 12,626,031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| 29,379,213  | 881,376    |
|      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| 12,563,045  | 376,891    |
|      |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 | 12,563,045  | 376,891  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| 16,816,168  | 504,485    |
|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| 476,359     | 14,291     |
|      |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  | 1,262,116   | 37,863     |
|      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4,067,540   | 122,026    |
|      |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    | 283,493     | 8,505      |
|      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| 10,726,660  | 321,800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535,29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